

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
우리구 고척동 241-2번지 일대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10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명 칭: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명 칭: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37번지 일대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상가동 201호

3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건축계획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1-2번지 일대 (대지면적 10,245.00㎡)
- 건축계획 : 5개동/지하2층/지상15층, 용적률 249.87%, 298세대(임대76세대 포함)

4. 변경내용

- 조합임원의 변경

연번	직책	변경 전	변경 후	비고 (변경 사유)
1	감사	최0규	최0규	
2	감사	-	이0자	신규선임

- 정관의 변경

변경 전 정관	변경 후 정관	비고
제15조(임원)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득표순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.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	제15조(임원)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<u>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다득표순</u> 으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.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<u>2년</u> 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	
제18조(임원의 해임 등)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.	제18조(임원의 해임 등)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, <u>3회이상 이사회 불참 시</u>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.	
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.	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 ②대의원의 수는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<u>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</u>	
제31조(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) 1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	제31조(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) 1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, <u>대의원</u> 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	